

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문제

과 목 : 건축설계 1

제1과제(평면설계)

배점 100 / 100

제 목 : 청년임대주택과 지역주민공동시설

1. 과제개요

도시가로주거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원룸형 청년임대주택과 지역주민공동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한다.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상1층과 2층 평면도를 작성하시오.

2. 건축개요

- (1) 용도지역 : 제2종 일반주거지역
- (2) 계획대지 : <대지 현황도> 참조
- (3) 대지면적 : 1,536m²
- (4) 규모 : 지하1층, 지상2층
- (5) 구조 : 철근콘크리트조
- (6) 건폐율 : 60% 이하
- (7) 용적률 : 200% 이하
- (8) 층고 : 지하층 3.6m, 지상1층 4.5m, 지상2층 3.6m
- (9) 조경면적 : 대지면적의 10% 이상
- (10) 승강기 : 1대 (승강로 내부치수는 2.8m×2.8m)
- (11) 주차 : 지역주민용 장애인 옥외주차 1대를 제외한 모든 주차는 지하주차장으로 함

3. 설계조건

- (1)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.
- (2) 다양한 행사를 위한 나눔마당을 10m 생활가로와 동측 공원에 연계하여 계획한다.
- (3) 주민간 소통과 휴식을 위한 두레마당을 나눔마당과 연결하여 계획한다.
- (4) 북카페는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10m 생활가로변에 계획한다.
- (5) 작은도서관은 동측 공원과 두레마당을 연계하여 계획한다.
- (6) 주민사랑방은 1층에서는 다른 시설과 분리 배치하고, 나눔마당과 두레마당에 접하게 계획한다.
- (7) 공방은 서측 6m 도로변에 계획한다.
- (8) 원룸의 주 조망 방향은 10m 도로와 6m 도로에 면하도록 한다.
- (9) 대지주변 주거지의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원룸의 단위세대 조합은 10m 도로에서 8세대 조합 이내, 6m 도로에서 6세대 조합 이내로 계획한다.

- (10) 공동거실은 동측 공원을 향하여 배치하고, 30m² 이상의 발코니를 계획한다.
- (11) 서측 6m 도로에서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계획하고, 10m 생활가로에서 25m 이상 이격한다.
- (12) 청년임대주택의 1층 출입구는 두레마당을 거쳐 접근하도록 하고, 지역주민공동시설 출입구와는 분리한다.
- (13) 두레마당과 지상2층의 청년임대주택을 연결하는 외부 피난용 계단을 설치한다.
- (14) 지하층 계획은 하지 않는다. 단,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서측 6m 도로에 계획하고 위치를 1층 평면도에 표기하며, 주차램프 너비는 3.5m 이상으로 한다.
- (15) 지역주민을 위한 옥외 장애인용 주차장 1면을 계획한다.
- (16) 대지 서측에 위치한 보호수목은 보존한다.

4. 건축물 및 외부공간 소요면적

- (1) 각 실의 면적과 연면적은 5%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.
- (2) 원룸의 면적 : 제시된 면적은 세대별 화장실 면적을 포함한 전용면적으로 실외기실, 설비 및 발코니 면적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.

구 분	실 명	면적(m ²)	비 고
지상1층 (지역주민 공동시설)	북카페	155	주방 포함
	작은도서관	135	
	공방	95	창작 및 판매공간
	주민사랑방	50	다목적 주민이용공간
	화장실	40	남녀 장애인화장실 포함
	공용공간	40	지역주민공동시설 : 로비 등
		50	청년임대주택 : 승강기홀, 계단실 등
소 계	565		
지상2층 (청년 임대주택)	원룸	480	20세대 × 약 24m ²
	공동거실	115	주방 포함, 발코니 면적 제외
	다목적실	25	취미, 작업 및 업무공간
	회의실	25	
	세탁실	15	
	공용공간	180	복도, 계단실, 엘리베이터홀 등
	소 계	840	
합 계	1,405		
외부공간	나눔마당		200m ² 이상
	두레마당		120m ² 이상

5. 도면작성 요령

- (1) 조경, 주차램프 등 외부공간과 관련된 배치계획은 1층 평면도에 표현한다.
- (2) 주요치수, 축선, 출입문, 실명 및 각 실의 면적 등을 표기한다.
- (3) 벽과 개구부가 구분되도록 표기한다.
- (4) 단위 : mm, m²
- (5) 축척 : 1/200

6. 유의사항

- (1) 답안작성은 반드시 흑색 연필로 한다.
- (2)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임의로 한다.
- (3) 치수 표기 시 답안지의 여백이 없을 때에는 융통성 있게 표기한다.

<대지 현황도> 축척 없음

